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회칙

[2004년10월 제정]

[2005년 2월 개정]

[2006년 1월 개정]

[2007년 1월 개정]

[2009년 1월 개정]

[2012년 2월 개정]

[2016년 2월 개정]

[2021년 1월 개정]

[2023년 2월 개정]

전 문

최근 노동안전보건운동은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고 작업환경에 대한 노동의 통제 실현을 목표로 부단히 성장하여왔다. 경제 위기 이후, 현장에 몰아닥친 구조조정과 노동 강도의 강화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동재해와 직업병의 증가로 노동현장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전체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저조하다. 현장 노동운동 역시 노사 협조주의가 확대되고 계급적 대응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문적 노동안전보건 활동 역량은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류와 한계를 반복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장성, 전문성, 계급성을 기치로 노동안전보건운동의 전국적 센터 건설이 절실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현장의 주체적 참여와 결의에 기초한 노동안전보건운동을 선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전문주의와 노사 협조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장운동에 기초한 지역별 체계를 구축하고, 부문적 활동이 아닌 사회의 근본적 변혁을 위한 영역별 활동 내용과 주체를 세우고자 한다. 본 연구소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 노동에 의한 작업장 통제의 실현,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과 노동 해방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조직의 명칭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Korea Institute of Labor

Safety and Health, KILSH」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조직은 노동안전보건 활동의 한 주체로서, 작업장 통제권과 건강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제3조 (사업) 본 조직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노동자의 작업장 통제권과 건강한 작업환경 확보를 위한 전국적 연대 활동

②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실천적 기획과 전략전술 개발을 위한 연구기획 활동

③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

④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대중화를 위한 편집 및 선전 활동

⑤ 노동안전보건 운동의 강화를 위한 연대 활동

⑥ 노동운동의 정치적 계급적 강화에 복무하기 위한 조직 활동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조직의 목적과 회칙에 동의하는 개인으로 구성한다.

제5조 (회원의 권리) 본 조직의 회원은 연구소 연구원으로서 자격을 가지며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본 조직 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2. 각종 사업과 활동에 평등하고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3. 모든 사업과 활동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전문개정 2023.02]

제6조 (회원의 의무) 본 조직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회칙,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회비 납부를 성실히 할 의무
3. 본 조직의 명예와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본조 신설 2023.02]

제7조 (가입과 신입회원의 의무) ① 본 조직의 가입은 가입신청서 제출과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개정 2023.02]

② 신입회원은 본 조직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야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정지) ① 회원은 6개월 이상의 회비를 미납한 경우 회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정지의 기간과 복권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 신설 2023.02]

제9조 (회원의 탈퇴) ①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탈퇴를 요청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23.02]

제10조 (회원의 징계)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해 제명, 권리 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경위 제출, 변상, 교육 이수 등을 부과할 수 있다.

1. 본 조직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성적자기결정권, 인격권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로서 운영위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행위

② 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 10인 이상의 회원은 구체적 사유가 적시된 서면을 통해 제1항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징계 중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운영위원회

의 출석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④ 회원의 징계 소명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내규에 따른다.
⑤ 탈퇴하거나 제명당한 회원은 납부한 회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23.02]

제3장 조직구성

제11조 (구성) 본 조직은 회원 모임, 위원회, 센터를 기본 활동 체계로 한다. [개정 2023.02]
제12조 (회원 모임) ① 회원 모임은 5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모임이다.
② 회원 모임은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여 결성할 수 있다.
③ 회원 모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집행위원회에 인력, 재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02]
제13조 (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본 조직 목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결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대표는 해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해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전문개정 2023.02]
제14조 (센터) ① 운영위원회는 특정 의제를 갖고 연구소 활동의 발전 및 확대를 위해 5인 이상의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성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센터의 대표는 해당 센터에서 선출한다.
③ 센터의 폐지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본조 신설 2023.02]

제4장 회의 및 기구

제1절 총회

제15조 (지위 및 구성) 총회는 본 조직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02]
제16조 (역할) 총회는 다음의 역할을 한다.
① 회칙의 제정 및 개폐
② 임원(소장, 집행위원장, 운영위원, 회계 감사) 선출 및 해임
③ 사업방향 및 사업기조 심의 의결
④ 예산의 심의 및 결산 승인
⑤ 조직의 해산
⑥ 기타 특별 사업기구 설치 심의 및 의결
⑦ 기타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02]
제17조 (총회의 소집, 통보) ①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임시 총회는 소장 또는 회원의 2/5 이상 또는 운영위원의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주 안에 소집해야 한다.
② 총회의 공지는 총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해야 하며 홈페이지와 유·무선 연락을 이용해 공지한다.
③ 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공지와 함께 총회의결권을 가진 회원들에게 주요 의결 안건을 홈

페이지 및 이메일 등의 방법을 통해 공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02]
제18조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1/10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재적 회원 총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고자를 제외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사고는 근무, 부상, 질병, 출산, 육아, 해외 출장 등으로 규정한다. [본조 신설 2023.02]
제19조 (조직의 해산) 본 조직의 해산에 관련한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20조 (지위와 구성) 운영위원회는 총회에 다음가는 의사결정 기구로서 소장, 집행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총회에서 20인 이내로 선출하는 운영위원(당연직 운영위원 포함)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와 센터의 대표는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의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5.02][개정 2006.01][개정 2021.01][개정 2023.02]
제21조 (역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 안건 상정 및 수임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회칙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
7.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가입, 징계 및 제명
9. 상임활동가 임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10. 위원회, 센터의 승인 및 해산
11. 운영위원 궐석 시 충원
12. 기타 주요한 사항 [전문개정 2023.02]

제22조 (소집 및 의결)
① 운영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의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05.02]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원의 1/5이상, 운영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장이 소집한다.

제23조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운영위원이 새롭게 선출될 경우 전임자의 잔여 기간을 대신한다.

제3절 소장, 집행위원장, 상임활동가 [2006.01개정][2023.02 제목개정]

제24조 (소장, 집행위원장의 지위와 역할) ① 소장은 본 연구소를 대외적으로 공식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총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으로서 조직 활동 전반을 총괄한다.
②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총괄하며, 회원의 관리, 예산의 집행 및 보고, 사업의 집행 및 보고를 책임진다. [제목 개정 2023.02]
제25조 (소장, 집행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① 소장, 집행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06.01][제목 개정 2023.02]

제4절 집행위원회

제26조 (집행위원회의 지위 및 구성) ① 집행위원회는 운영위의 심의 결정 사항에 근거하여 본 조직의 일상 활동과 사업을 총괄한다.
② 운영은 집행위원장이 총괄하며 궐석 시, 운영위원회에서 대행을 임명할 수 있다.
③ 집행위원의 구성은 소장과 집행위원장의 추천을 통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01][제목 개정 2023.02]
제27조 (집행위원회 역할)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수임사항을 집행한다.
② 본 조직의 일상적인 사업을 총괄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 개최를 준비하고 상정안건을 작성한다.
④ 신입회원에 대해 체계적인 안내와 교육을 담당한다. [제목 개정 2023.02]
제28조 (집행위원의 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목 개정 2023.02]
제29조 (상임활동가) ① 본 조직의 상임활동가 임면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상임활동가 관련한 내규를 둘 수 있다.
③ 상임활동가는 회원으로 가입한다. [본조신설 2023.02]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0조 (선거관리위원회) 임원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을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 2023.02]

제5장 의결

제31조 (일반 의결)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여,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정

제32조 (재정의 원칙) 본 조직의 재정은 회원들의 회비를 우선으로 하고 공익성과 독립성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3.02]
제33조 (재정) 본 조직의 재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본 조직의 재정은 회비와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② 본 조직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③ 재정 운영은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23.02]
제34조 (회계 감사) 운영위원회가 추천하고 전체 총회에서 선출한 1명 이상의 회계감사를 두어야 하며, 집행위원장은 정기 총회에 앞서 15일 전 전체 결산 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회계 감사에게 제출하고, 각 집행 책임자는 회계 감사의 요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회계 감사 보고서는 총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개정 2012.02]

제35조 (회계감사 임기) 회계 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감사의 유고 상황 발생 시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임시 감사를 위촉한다.

부칙 [2023.02]

제1조 (통상관례)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제2조 (회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 10월 24일 현재 회원과 후원회원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회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3조 (시행일) 이 개정안은 2023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